**2016년 제부도 명소화 문화재생 사업**

**- 화성시 관광진흥과, 경기창작센터 -**

**과 업 지 시 서**

**제부도 명소화 문화재생 사업**

* **사 업 의 목 적**

가. 화성시 대표 관광지 제부도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경관을 예술, 디자인, 건축으로 정비하고 조성하여 회복하고, 심미적이며 특색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고자 함

나. 제부도의 브랜드를 담은 디자인의 안내시설물과 가로시설물로 방문객에게 편의와 재미를 주며, 문맥적인 친근한 디자인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하며 소통하고 휴양하는 제부도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함

다. 제부도만의 예술, 문화, 컨텐츠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제부도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함.

* **과 업 현 황**

**1. 목 적**

제부도 명소화 문화재생 사업의 첫 단계로, 그동안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대표 관광지 제부도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담은 안내/가로 시설물을 제작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긍정적인 제부도 이미지와 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섬으로의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함.

**2. 개 요**

가. 소요 예산액 : 78,760,000원 (부가세 포함)

나.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 되었을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때

다. 참가자격

본 과업에 참여하는 용역수행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 **과업의 세부내용**

**1. 과 업 위 치 및 내 용**

가. 과업위치: 제부도 전망대 입구, 해안산책로길 (바람길), 해수욕장(모랫길) 일원

**\*\* 별도 첨부된 공사 구간 및 현장 이미지 PDF 참고**

나. 과업개요

- 벤치 제작설치

1. 공통 및 가설공사
2. 소라존 벤치공사
3. 탑재산 벤치공사
4. 해수욕장 벤치공사

**\*\* 세부 사항 규격서, 현황사진, 랜더링 등의 별도 첨부한 PDF참고**

**2. 과 업 의 지 침**

가. 설치 방식 역시 세부 사양 규격서를 그대로 따르고, 설치 위치도 지시서 및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해야 한다.

나. 벤치 제작에 사용할 재료의 종류, 가공방법, 설치방법 등은 세부 사양 규격서에 명시된 바를 그대로 따르되, 설치 장소의 환경을 고려하여 관리와 유지를 위해 그보다 적합한 자재나 기술, 공법 등이 있다면 감독관에게 제안하여 승인 후 진행한다.

**3. 과업수행의 특별사항**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에 착수하기전, 발주처와 감독관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벤치 제작 전에 현장조사 및 필요하면 규격 및 공법 변동의 가능성을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제작에 착수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예정공정표를 발주처와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일정별 과업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과정에서 생산된 성과물의 모든 권리는 화성시와 소다미술관 (디자인과업 수행 업체)가 가지므로, 향후 승인이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다.

- 본 과업과 관련해 입수된 자료와 산출물은 (재)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4. 과 업 수행 일 반 사 항**

가. 과업의 착수

- 본 과업 수행자는 과업기간 및 과업의 기본내용을 숙지하여 착수하여, 철거와 작 설치의 공정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나. 과업내용의 변경

-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 설치 현장 상황과 실정에의한 설계와 수량의 변동은 감독관 지시에의해 도급액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 제작은 과업지시서 및 상세도면의 검토과 완료된 후 실시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안전관리

- 시공도중 도급자는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주민불편사항 및 시공도중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 도급자는 설치 현장 및 그 주변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주변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급수관, 배수관, 오수관, 전기배선, 기타 매설물과 부딪힐 때에는 이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자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 기존시설 철거 후 제작된 시설물 시공시 현장의 강풍 및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라. 납품

- 본 과업에서 규정하는 ‘최종 성과물’은 철거공사, 안내시설물 가로시설물의 제작 및 설치까지 완료된 상태를 가리킨다.

- 최종 성과물은 발주처 지정한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납품한다.

마. 품질보증 및 보수

-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검수완료 및 납품(설치) 후 2년으로 한다.

- 2년 이내에 제작 및 설치 시공등의 이유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제작자는 이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를 제작설치자 부담으로 전면 교체 수리완료 하여야 한다.

- 제작 설치자는 해당부분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 결과물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재 과업의 실시

- 감독관의 최종 성과물 (철거, 제작, 설치) 검사시, 이상이 있는 경우, 설치(납품)를 전면 중단하고 재 제작을 실시해야 한다.

- 이 경우, 과업 재수행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하고, 발주처가 요청사는 기간안에 제작 및 설치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사.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과업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중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철거 및 설치시 도로점용 관련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 등 인 허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 후 제작 설치 한다.